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안장환 의원 외 8명

2.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안 제5조, 제6조)

라. 어린이 통학로 지정(안 제7조)

마.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안 제8조, 제9조)

바. 재정지원(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4조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0. 9. 1. ~ 9. 7.)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은,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어린이보호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에 따라 대대적인 시설 정비와 통학로 지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